

창원지방법원 2024. 11. 26 선고 2024가단11880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

담당변호사 김민수, 김성환, 신정인, 조아라

피 고 B(개명 전 C)

변 론 종 결 2024. 11. 5.

판 결 선 고 2024. 11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6. 2. 25. 접수 제164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20. 6. 30. 접수 제558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,

나.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7. 4. 6. 접수 제315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20. 6. 30. 접수 제558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,

다.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및 제4항 건물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신동호

별지